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중앙대학교
2.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3.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4.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5.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 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3절 삭제 <2006.09.04.>

제13조(삭제) 〈2006.09.04.〉

제14조(삭제) 〈2006.09.04.〉

제15조(삭제) 〈2006.09.04.〉

제16조(삭제) 〈2006.09.04.〉

제17조(삭제) 〈2006.09.04.〉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종류 및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변경 2006.09.04.〉

1. 이사 12명 〈변경 2006.07.07.〉

2. 감사 2명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 〈신설 2006.09.04.〉

제2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3년

2. 감사 2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06.09.04.〉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2006.09.04.〉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변경 2005.07.13.〉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방이사추천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이 밖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대학평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24조의3(개방이사추천협의회) ①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평의위원회 4명
2.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각각 1명

③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세부운영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2006.09.04.>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2를 준용하되, 단수로 추천 받는다. <신설 2006.09.0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09.04.>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변경 2005.07.13.>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검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6.09.04.>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변경 2006.09.04.>)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변경 2006.09.04.>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2006.09.04.>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

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 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 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다.

[본조신설 2006.09.04.]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 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06.09 .04.>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운영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임업

3. 전산원 운영
4. 어학원 운영
5. 축산 및 목장업
6. 건설 및 주택사업
7. 장의예식업 <신설 2005.11.01.>
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신설 2005.11.01.>
9. 농업 및 어업 <신설 2005.11.01.>
10. 연수원운영업 <신설 2005.11.01.>
11. 도매 및 소매업 <신설 2005.11.01.>
12. 상기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변경 2005.11.01.>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제36조의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이 직접 경영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명칭과 주소를 정한다.

1. 명수중앙빌딩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5-26

제38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변경 2006.09.0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된다.

제41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 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2조(임면 및 임기)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경 2006.09.04.>

② 대학교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변경 2006.09.04.>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정관 제48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학교의 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조교는 학교의 장이 임면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대학교의 부총장, 의료원장, 대학원장, 학장 및 교무위원 등 교원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변경 2006.09.04.>

⑦ 제1항 및 제2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06.09.04.>

제42조의2(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05.11.01., 2006.09.04.>

1. 교원이 제4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변경 2005.11.01.>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2005.11.01.>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09.04.>

제42조의3(전형결과 공개) ① 고등학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2관 신분보장

제43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06.09.04.>

제44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제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3조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한다.

7. 제43조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8. 제4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09.04.>

제45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3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6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 중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변경 2006.09.04.>

② 제43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변경 2006.09.04.>

제47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명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명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8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의2(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9조의3(명예퇴직수당)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전향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 중·고등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2006.09.04.>

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2조제2항의 교원 임용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변경 2006.09.04.>
3. 총장이 교원 보직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의 임면, 보직,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2006.09.04.>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 대한 능력과 실적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변경 2006.09.04.>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09.04.>

제53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제1캠퍼스 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6조(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삭제)

제60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징계사유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징계하지 못한다. <변경 2006.09.04.>

제66조(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7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68조(삭제)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2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경 2006.09.04.>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 임용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3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06.09.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신분보장)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기관의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87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8조(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되, 처장은 2급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기획조정부, 총무부 및 경리부를 두고, 각 부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부에는 기획과 및 사업과를 두고,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총무부에는 총무과 및 관제과를 두고,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경리부에는 경리과를 두고,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89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제1캠퍼스 부총장, 제2캠퍼스 부총장, 의무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 다만, 의무부총장의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변경 2007.05.08.>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의 유고시는 제3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대학원장, 학장 및 교양학부장)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대학에 학장, 교양학부에 교양학부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장, 학장 및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각 대학원장, 학장 및 교양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대학 및 교양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1조(대학교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본부, 제1캠퍼스교무처, 제2캠퍼스교무처, 제1캠퍼스연구지원처, 제2캠퍼스연구지원처, 제1캠퍼스학생지원처, 제2캠퍼스학생지원처, 입학처, 사무처, 제1캠퍼스관리처, 제2캠퍼스관리처, 전산정보처, 제1캠퍼스사회교육본부, 제2캠퍼스사회교육본부, 생활관, 홍보실, 체육부를 둔다. <변경 2005.07.13., 2006.07.07., 2007.05.08.>

② 실, 본부, 처, 관에 실장, 본부장, 처장, 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실장, 홍보실장 및 체육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7.05.08.>

③ (삭제) <2007.05.08.>

④ (삭제) <2007.05.08.>

⑤ (삭제) <2007.05.08.>

⑥ (삭제) <2007.05.08.>

⑦ (삭제) <2007.05.08.>

⑧ (삭제) <2007.05.08.>

⑨ (삭제) <2007.05.08.>

⑩ (삭제) <2007.05.08.>

⑪ (삭제) <2007.05.08.>

⑫ (삭제) <2007.05.08.>

⑬ (삭제)

⑭ (삭제) <2006.07.07.>

⑮ (삭제) <2007.05.08.>

⑯ (삭제) <2006.07.07.>

⑰ (삭제) <2007.05.08.>

⑱ (삭제) <2007.05.08.>

⑲ 실, 본부, 처, 관에는 필요에 따라 부실장, 부분부장, 부처장, 부관장, 센터장, 교육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7.05.08.>

⑳ 제1항, 제2항 및 제19항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07.05.08.>

제91조의2(산학협력단)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단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92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원, 대학 및 교양학부에 행정실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교육센터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변경 2006.07.07., 2007.05.08.>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행정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7.05.08.>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변경 2007.05.08.>

제93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 중앙사회복지관, 기초과학센터, 보건관리소, 아트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산업과학대학부속농장, 중대신문사, 교육방송국, 중앙헤럴드, 교목실 등 필요한 기관을 둔다.<변경 2007.05.08.>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중앙사회복지관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07.05.08.>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삭제) <2007.05.08.>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07.05.08.>

제94조(도서관 등) ① 대학교에 중앙도서관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필요에 따라 부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7.05.08.>

② 중앙도서관에 필요에 따라 박물관, 분야별 전문도서관을 둘 수 있으며, 각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7.05.08.>

③ (삭제) <2007.05.08.>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07.05.08.>

제95조(의료원) ① 대학교 산하 각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통할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을 관리·운영한다.

④ 의료원에 행정부서로 기획실과 관리실을 두며, 기획실장과 관리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의료원 기획실에 기획과·교육연구과·홍보과·전산정보과·적정진료관리과를, 관리실에 인사과·노무과·예산심의과·구매관리과·시설관리과를 두고, 각 과장은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변경 2005.01.11.>

⑥ 의료원 산하에 다음의 부속병원을 둔다.

1. 중앙대학교병원 <변경 2005.01.11.>

2. 중앙대학교용산병원 <변경 2005.01.11.>

⑦ 의료원 산하에 의학연구를 위하여 연구소를 부설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⑧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⑨ 각 부속병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⑩ 각 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속병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⑪ 각 부속병원에는 진료부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하고, 각 부속병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부와 간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07.05.08.>

⑫ 각 부속병원에는 진료부와 교육연구부, 간호부, 관리부를 두며, 각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한다.

⑬ 각 부속병원 진료부에는 진료 각 과와 약제과, 영양과, 의무기록과, 사회사업과, 진료의뢰협력센터, 감염관리실을 두며, 진료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진료 각 과에는 교원 외에 전문의를 둘 수 있으며, 약제과장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4급 이상으로, 기타 과장은 4급 이상의 기술직 및 일반직으로 보한다. <변경 2006.03.07., 2007.05.08.>

⑭ 각 부속병원 교육연구부에는 도서실, 의학사진실을 둔다.<신설 2007.05.08.>

⑮ 각 부속병원 간호부에는 교육행정간호과, 병동간호과, 외래특수간호과를 두며, 각 간호과장은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4급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07.05.08.>

⑯ 각 부속병원 관리부에는 총무과, 원무과, 보험심사과, 경리과, 관리과, 시설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변경 2005.01.11., 2006.03.07.>

⑰ 각 부속병원에 원장 산하의 적정진료관리과를 둔다.<신설 2007.05.08.>

⑱ 각 실, 부에는 필요에 따라 부실장, 차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 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⑲ 의료원과 각 부속병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고등학교

제96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변경 2006.09.04.>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7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교사로 겸보한다.

② 고등학교 사무조직으로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중학교

제98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의 유고시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9조(하부조직) ① 중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교사로 겸보한다.

② 중학교 사무조직으로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초등학교

제100조(교장 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는 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01조(하부조직) ① 초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교사로 겸보한다.

② 초등학교 사무조직으로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유치원

제102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는 원장과 원감 각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는 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8급 이하 1인을 두며, 그 분장업무는 유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절 정원

제103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2, 3, 4와 같다. <개정 2005.11.01., 2006.07.07.>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4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5조(위원 정수) 위원회 정수와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6조(위원 선출) ① 당해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0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 학년도 4월 1일로 한다.

제10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111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 규정의 제·개정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1.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13.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4.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9.04.>
1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9.04.>
16.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06.09.04.>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12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11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113조(운영경비 등) 위원회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14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6호(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8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0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1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3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 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

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5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대학평의위원회 [본장신설 2006.09.04.]

제127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128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09.04.]

제129조(평의회 의장 등) ① 평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130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131조(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09.04.]

제132조(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09.04.]

제10장<변경 2006.09.04.> 보칙

제133조<변경 2006.09.04.>(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공인의 2개 신문에 공고한다.

제134조<변경 2006.09.04.>(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35조<변경 2006.09.04.>(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주 소
이 사 장	임 영 신	1947. 4. 1.~1950. 3. 31.	흑 석 동
이 사	김 태 오	1947. 4. 1.~1950. 3. 31.	흑 석 동
이 사	임 태 희	1947. 4. 1.~1950. 3. 31.	흑 석 동
감 사	임 건 희	1947. 4. 1.	흑 석 동
감 사	오 승 근	1949. 3. 31.	청 파 동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1964. 3. 25. 인가)

이 정관은 1965. 2. 25.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 인가)

이 정관은 1967. 11. 7.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인가)

이 정관은 1972. 6. 23.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 인가)

이 정관은 1973. 12.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인가)

이 정관은 1975. 10. 25.부터 시행한다. (제30,31,32,35조 개정 인가)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9장의2 개정 인가)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 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3,4,5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폐지되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의 기구는 1979년 2월 28일까지 구 정관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7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 제외)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중앙대학교 총장 이석희 1984. 5. 8.까지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김현명 1983. 2. 28.까지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교장 장지환 1983. 2. 28.까지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이찬수 1983. 2. 28.까지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교장 허재욱 1983. 2. 28.까지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교장 이성기 1982. 5. 20.까지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원장 황소향 1983. 2. 28.까지
- ⑤ (대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교원의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9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 중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개정되는 정관은 1996. 3.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개정되는 정관은 1996. 4.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42조 제2항은 개정당시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학부장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과 함께 폐지된 교학부장제중 일반 대학원 교학부장제는 2000년 2월 28일까지 시행을 유보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제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및 제51조 개정정관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이 정관 개정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교수 : 정년까지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4년
4. 전임강사 : 2년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원의 직급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구분	인원	직급별 구분	인원
총 계	22명	기능직 계	3명
일반직 계	19명	6등급	1명
2급	1명	(기원)	
3급	2명	7등급	1명
4급	3명	(기원보)	
5급	5명	8등급	1명
6급	2명	(기원보)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별표 2)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변경 2006.07.07.>

직급별 구분		인원	직급별 구분		인원
총계		557명	기능직	7등급 계	48명
행정직 · 사서직	소계	330명		7등급 (기원) (기원보) (방호원) (환경원)	
	2급	8명		8등급 계	75명
	3급	22명		8등급 (기원) (기원보) (방호원) (환경원)	
	4급	58명		9등급 계	16명
	5급	80명		9등급 (기원보) (방호원) (환경원)	
	6급	68명		10등급 계	15명
	7급	10명		10등급 (방호원) (환경원)	
	8급	58명			
	9급	26명			
기술직	소계	25명			
	4급	1명			
	5급	7명			
	6급	7명			
	7급	3명			
	8급	5명			
기능직	9급	2명			
	소계	202명			
	6등급 계	48명			
	6등급 (기원) (기원보) (방호원) (환경원)				

(별표 3) 의료원 및 부속병원 일반직원 정원 <변경 2005.11.01.>

직급별 구분			인원	직급별 구분		인원
총계			1,420명	기능직	7등급 계	30명
일반직	소계	940명	7등급 (운전기사) (목공기사) (전기기사) (수도기사) (교환원)			
	2급	5명				
	3급	12명				
	4급	60명				
	5급	150명				
	6급	295명				
	7급	235명	8등급 계		42명	
	8급	180명	8등급 (운전기사보) (목공기사보) (전기기사보) (수도기사보) (교환원보)			
	9급	3명				
기술직	소계	315명				
	3급	4명				
	4급	40명				
	5급	50명				
	6급	23명				
	7급	90명				
	8급	80명				
	9급	28명				
기능직	소계	165명				
	6등급 계	20명				
	6등급 (운전기사) (목공기사) (전기기사) (수도기사)	9등급 계			60명	
		9등급 (운전기사보) (목공기사보) (전기기사보) (수도기사보) (교환원보)				
	10등급 계	13명				
	10등급 (고용원)					

(별표 4) 각급학교 및 유치원 일반직원 정원

직급별 구분	인원			
	부속유치원	부속초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
총계	3명	12명	7명	11명
일반직 계	1명	3명	3명	3명
5급				1명
6급		1명	1명	1명
7급			1명	1명
8급	1명	2명	1명	
9급				
기능직 계	2명	9명	4명	8명
기능직(9등급)		2명	2명	2명
기능직(10등급)	2명	7명	2명	6명